

언론중재사례로 본 지역 언론

이 연 수

(광주중재위원 · 전 광주KBS여수방송국장)

I. 서론

우리 나라 반론권의 맹아는 1907년(光武 11년) 7월 24일 통감부가 법률 제 1호로 반포한 광무신문지법 제20조에 규정한 내용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최초의 언론탄압 성문법이라 지칭되는 이 법에서 규정한 개념은 개인의 권리 보다는 오히려 틀린 기사의 정정이라는 관현적 발상에서 근거한 것이었다.

반론권이 인격권의 하나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1980년 언론중재제도의 출범과 함께 했다고 할 수 있다. 언론중재제도 및 반론권을 규정한 1980년 언론기본법은 그 출생동기의 불순함으로 인해 폐지되었으나, 우리 나라만의 독특한 반론권 제도로 정착한 언론중재제도는 그 긍정성을 인정받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정간물법’)에 그대로 유지되었다. 정간물법이 1995년 개정되면서 반론권은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1996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정간물법은 그동안 명칭은 정정보도청구권이지만, 성격은 반론권으로 파악되어 왔던 권리의 명칭을 반론보도청구권으로 명문화하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중재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중재결정권은 언론사와 신청인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중재불성립되어 중재위원회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었던 과거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¹⁾

우리나라 반론권제도는 19C 후반에 반론권 조항이 생긴 프랑스나 독일에 비해 그 역사가 짧지만 명예훼손에 대한 하나의 구제방법으로서 비교적 빠르게 정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언론으로 인한 피해 조정기구로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그 유용성을 검증받아왔다. 언론중재위원

1) 조준원, “변화하고 있는 반론권 요구와 수용”, 『밀레니엄』, 1998년 가을.

회에 접수되는 중재신청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와 60%를 상회하는 피해구제율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역으로 아직까지도 언론의 반론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비단 언론중재신청사건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자율규제기구라 할 수 있는 신문윤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반론권 보장 미흡이 윤리강령을 위반한 기사 가운데 1999년과 2000년에 연속으로 제재사유 1위를 차지한데서도 알 수 있다.²⁾

이 글은 지난 5년간 광주중재부에서 접수·처리한 중재신청 사건을 중심으로 중재신청사건의 추이와 그 처리결과를 살펴보고, 광주·전남 지역언론의 보도 양태를 통해 그 문제점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중재신청 대상이 된 보도가 반드시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재신청 대상보도가 오보라는 평가 역시 수용하기 곤란하다. 하지만 중재신청 대상 보도가 오보는 아니라 할지라도 보다 바람직한 보도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 무리한 추출은 아니라고 본다.

II. 언론중재신청사건 처리 현황 및 추세

1. 개괄

언론중재위원회가 1981년 창립이후 2003년까지 처리한 중재신청사건 수는 총 7,592건으로, 이 가운데 대부분(62.9%)의 사건은 서울중재부 관할이었다. 서울과 지방간 중재신청사건 구성 비율은 연도별로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으나 대략 6:4 정도이다. 전국의 지방중재부 가운데 광주중재부는 2003년까지 총 408건을 처리하여 경기중재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5.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중재부의 중재신청사건 처리비중을 좀 더 자세히 본다면 경기>광주>부산중재부의 순이나 경기와 광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방중재부의 비중은 5%를 넘지 않는 미약한 수준이다.

2) 중앙일보, 2001. 5. 8.

중재신청사건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까지만 해도 두 자리 숫자에 머물던 중재신청은 1989년 121건으로 첫 세 자리 수에 진입한 이래 1994년에 500건을 넘어섰고 1997년을 제외하고는 500건 이상의 중재신청 추이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03년에는 역대 가장 많은 724건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1980년대 말부터 중재신청이 급증한 이유로는 첫째, 정기간행물의 등록 요건 완화에 따른 대중매체의 급증과 매체환경의 변화 둘째, 언론중재 위원회의 인지도 상승 셋째, 87년 민주화 운동으로 고양된 국민들의 권리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³⁾

처리결과, 2003년까지의 전체 중재신청사건 7,592건 가운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2,378건으로 31.3%의 합의율을 보였다. 중재처리결과와 무관하게 피해구제보도가 이루어진 경우는 전체 사건의 58.6%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합의에 이른 사건은 3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나 피해구제율이 60%에 가까울 정도로 높아진 것은 중재신청 후 언론사 스스로 반론 내지 정정보도를 한 경우나 중재결정을 받아들인 경우, 중재불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한 경우 등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2. 광주중재부의 중재신청사건 처리현황(2000년부터 현재까지)

2000년 이후 광주중재부에서 처리한 중재신청 사건 수는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에 28건이었던 중재신청은 지난해 40건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추세가 이 지역의 언론매체 수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광주·전남지역의 매체 수는 언론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기형적이라고도 평가되고 있다. 필자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광주·전남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는 11개이며, 올해 새롭게 창간된 무료일간지를 포함하면 무려 13개나 된다. 지역 주간신문이나 방송까지 고려한다면 많은 언론매체 수에 비해 오히려 적은 중재신청이라고

3) 한동원, “중재신청사건으로 본 언론중재 20년”, 『언론중재』, 2001년 봄, p.30.

도 볼 수 있다. 이는 이 지역 언론매체의 보도가 정도를 견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왜곡된 언론시장이 초래한 이 지역 수용자들의 해당 지역 매체 접촉도가 매우 낮은 결과일 수도 있다.

지역매체 수와 중재신청과의 상관관계는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이 선행되어야겠지만 어찌됐든 앞서 언급했듯이 광주지역의 언론중재신청 사건 수는 서울과 경기중재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 2000년 이후 광주중재부의 중재신청사건 처리 현황

연도	신청건수	합의	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 불성립결정	취하	기각	각하
			동의	이의				
2000	28	6		1	1	20		
2001	32	11			8	7	6	
2002	39	15	2	1	8	13		
2003	40	16			10	14		
2004	26	8			7	11		
계	165	56	2	2	34	65	6	

중재처리결과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4년 10월까지 접수된 총 165건 가운데 56건이 합의되어 33.9%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10건 가운데 약 3건 정도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언론사간에 원만히 의견 접근이 이루어져 신청인이 요구한 보도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다. 광주중재부의 합의율은 전국 평균 합의율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00년도에는 21.4%를 기록하여 전국 평균 합의율에 비해 10% 이상 떨어졌지만 <표 2>에서 보듯이 그 이후에는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고 오히려 높은 해도 있었다. 그러나 중재처리 결과와 관계없이 피해구제보도가 행해진 경우를 살펴보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2년과 2004년을 제외하고 전국 평균 피해구제보도율과 10%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0년의 피해구제보도율 32.1%는 전국 중재부 중 가장 낮은 수치이며 2003년에도 제주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피해구제보도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수치는 중재심리 결과, 양 당사자인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 피해구제보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반증이 된다. 즉 언론중재 신청 후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정정 내지 반론보도를 하는 경우가 다른 지역 언론에 비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재신청사건의 상당수는 중재신청사건 접수 후, 해당 언론사가 자신의 보도에 대해 중재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인지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언론사와 신청인간 접촉을 통해 중재심리 전에 반론 내지 정정보도를 하여 중재신청사건을 종결짓는 경우가 많다. 언론보도 피해자에 대한 이 지역 언론사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리라 본다.

<표 2> 합의율 및 피해구제보도율 비교

연도	합의율		피해구제보도율	
	광주중재부	전국평균	광주중재부	전국평균
2000	21.4	32.6	32.1	61.1
2001	34.4	34.7	46.8	59.5
2002	38.5	35.6	61.5	61.1
2003	40.0	39.6	55.0	65.1
2004	30.8	34.9	69.2	64.8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 뿐만 아니라 정정보도나 사안에 따라 추후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 중재신청인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도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보도에 대해 신청인이 반론보도청구를 할 것인가, 정정보도청구를 할 것인가는 신청인의 자유의지에 속한다. 신청인이 어떤 청구를 주로 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광주중재부에 접수된 중재신청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정정보도청구를 선호하고 있다. 정정보도청구를 선호하는 것은 비단 광주중재부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신청인이 이 지역에 연고를 둔 점을 감안한다면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정정보도청구 선호경향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0년의 경우 정정보도청구 비율이 무려 90%에 가까웠다. 이후 반론보도청구 비중이 점차 높아져 2003년에는 전

국 평균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3> 중재신청 청구명별 비교

연도	광주중재부			전국평균		
	반론보도 청구	정정보도 청구	추후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정정보도 청구	추후보도 청구
2000	3(10.7%)	25(89.3%)	·	211(34.8%)	368(60.6%)	28(4.6%)
2001	9(28.1%)	23(71.9%)	·	221(33.5%)	418(63.4%)	20(3.0%)
2002	13(33.3%)	26(66.7%)	·	201(39.3%)	307(60.1%)	3(0.6%)
2003	12(30%)	28(70%)	·	216(29.8%)	503(69.4)	5(0.7%)

신청인이 정정보도를 선호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나 사실관계의 입증에 어렵거나 언론보도 내용 중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박만으로 충분한 경우에도 정정보도만을 고집하는 경향이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신청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정보도청구에 비해 반론보도청구를 한 경우 합의율과 피해구제보도율이 높은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2003년도 중재신청처리결과를 보면 반론보도청구 사건의 합의율이 46.8%인 반면 정정보도청구사건은 36.8%로 10%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구제보도율 역시 반론보도청구사건은 정정보도청구사건에 비해 10% 높은 7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신청은 개인이 신청한 경우가 전체 165건 가운데 69건으로 41.8%를 보여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단체가 신청한 사건은 34건(20.6%), 지자체·공공단체가 31건(18.8%)으로 거의 비슷한 수치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신청인 유형은 전국적인 경향치와 매우 유사하다.

<표 4> 중재신청인 유형

구분 연도	구분							계
	개인	일반 단체	회사	교육 기관	종교 단체	국 가 기관	지자체 · 공공단체	
2000	13	1					14	28
2001	11	7	4	2			8	32
2002	22	4	6		2	1	4	39
2003	8	20	5			6	1	40
2004	15	2			1	4	4	26
계	69	34	15	2	3	11	31	165

중재신청 대상이 되었던 매체 유형을 살펴보면, 중재신청의 대부분은 지방 일간지를 상대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일간지를 상대로 제기된 중재신청이 전체 사건 중 7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간신문이 15.2%로 나타났다. 방송매체를 상대로 제기된 중재신청 사건 수는 총 14건인데, 이 가운데 라디오 방송매체를 상대로 제기되는 중재신청이 6건으로 TV매체를 상대로 제기된 사건 수(8건)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끌고 있다.

<표 5> 매체유형별 중재신청 현황

구분 연도	신청 건수	신문			방송		잡지
		지방 일간지	주간 신문	기타 신문	TV	라디오	
2000	28	24	1		2	1	
2001	32	18	10		3	1	
2002	39	34	3		1	1	
2003	40	31	6		1		2
2004	26	17	5		1	3	
계	165	124	25	0	8	6	2

III. 언론중재사례 분석

1. 사실관계 미확인 보도

1) 정정보도를 두 차례 한 사례

모 일간지는 2003년 3월 “지명수배자 동료학생 폭행 ‘몰의’” 제하의 기사에 “학원 폭력행사 등으로 지명수배 중인 학생이 동료를 집단 구타해 말썽을 빚고 있다. 광주 ○구 ○공고 ○년 ○모 군은 지난해 폭력 등으로 지명수배 중인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을 무사히 마쳤다는 것이다. ○공고 진학 후 ○군은 피해자 이모 군(○공고 1년)을 중3때부터 금품을 강요하는 등 괴롭혀오다 이군 아버지가 학교측에 ‘동료학생들로부터 더 이상 금품 갈취나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측에서 지도해 달라’고 말한 것에 격분, 이군 외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금품강요를 못하게 되자 지난 5일 학교 뒤 공사장 지하실로 끌고 가 집단구타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학원 폭력 등으로 지명수배 당한 사실이 없으며 중학교 또한 정상적으로 졸업하였고 신청인이 동료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고등학교 교내 불량씨클 조직원들과 연계되었다는 보도 역시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다(2003광주중재4).

중재신청사건이 접수된 후 해당 신문사는 자발적으로 “바로잡습니다”제하로 사건 당사자이며 중재신청인인 ○군이 “지명수배 중인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을 무사히 마쳤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바로잡는다는 정정 기사를 조그맣게 보도했다.

그러나 신청인은 이러한 정정보도 기사를 접하고도 신문사의 조치에 만족하지 못하였다. 원 보도에 비해 정정보도가 턱없이 적은 분량으로 눈에 띄지 않게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신청인은 중재신청을 지속하였고,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의 대부분이 반영된 원 보도에 준하는 분량으로 정정보도할 것을 언론사와 합의했다.

이 사건은 언론사가 사실관계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해당 기사가 잘못

되었음을 인정하였다면 원 보도에서 잘못된 부분을 성실히 정정보도하고 중재신청인과 사전 접촉하여 그 내용에 대해 협의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긴 사건이다. 언론사가 보다 성숙된 자세와 성실한 태도로 임했다면 최소한 2차례에 걸친 정정보도문이 게재되는 것을 막았을 것이다. 이처럼 며칠 간격으로 정정보도가 연이어 나간다면 독자들의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충분한 예견이 가능하다.

2) 사실확인 없이 일방의 진술만을 토대로 보도한 사례

한 일간지는 유흥업소 여종업원 감금사건을 수사하던 모 파출소가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건장치가 사라졌다고 보도하였다. “감금 중’ 이라는 신고에 따라 ○○파출소 직원들이 출동해 수사에 나섰으나 이 과정에서 신고자가 “시건장치가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진술해 감금의 결정적 증거가 사라졌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씨와 함께 경찰에 연행된 다른 여종업원들은 ‘그런 열쇠는 없었다’고 진술했고 업주도 감금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이 사건 기사에 대해 해당 파출소가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다(2003광주중재1). 그러나 이 사건은 중재심리 전에 해당 신문사가 중재대상 기사에 대해 스스로 “바로잡습니다” 제하로 “출동경찰이 현장 조사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월산파출소 직원들은 업소 여종업원인 배모 씨의 진술을 토대로 시건장치를 확인해 사진을 찍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로 정정하자 신청인이 취하하였다.

이 사건 보도의 경우 보도의 핵심 사항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만 확인하였더라면 사건 당사자 일방의 진술만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3) 확인되지 않은 ‘설(說)’을 보도한 사례

이 사건보도는 광주시 인사에서 특정인이 승진한 배경에는 모 국회의원이 개입했다는 설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이다.

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승진 연차가 5개월이나 남아있는 ○○○이 다른

후보자들을 제치고 부이사관에 승진한 것은 광주지역 모 국회의원이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퍼지면서 일부 인사들이 반발하는 등 파문. 이 관계자는 “광주시장과 서구청장이 추천하는 후보가 각기 달라 광주지역 모 국회의원이 교통정리를 해줬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시의 인사에 정치권이 개입하고 이를 시장이 허용한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고 전언. 이에 대해 ○○○은 “인사가 있기 전에 고등학교 선배가 되는 모 국회의원을 찾아간 것은 사실”이라며 “인사파문이 이렇게 커지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며 난감한 표정.

이 사건보도에서 지목된 국회의원은 자신은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 통화한 사실도 없다는 반론을 구하였고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반론보도를 게재하였다(2002광주중재2).

설은 말 그대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일 뿐이다. 설이나 소문이 취재의 단서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를 확인없이 보도하는 뿌리 깊은 관행을 떨쳐내지 못한 모습은 안타까울 뿐이다. 사실(fact)은 없고 설만 난무한다면 소설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2. 일방적 보도

언론보도는 분쟁과 관련이 깊다. 중재신청 대상 기사는 대부분은 ‘사건기사’이고 따라서 사건과 관계된 당사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들의 입장이 다각도로 나뉘어진 경우, 이들 당사자의 의견을 모두 균등하게 담아내는 것도 한정된 지면과 방송시간 탓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가 양분되어 있는 경우에도 어느 일방의 의견만 기사에 반영한다면 문제가 있다.

1) 사례 1

모 일간지가 2002년 12월에 게재한 “○구의원 구청에 개업 안내장” 제하의 기사에서 구의원인 신청인이 식당을 개업하면서 구청 직원들에게 개업 안내장을 보내 자신의 식당에서 연말회식을 가질 것을 당부하여 안내장을

받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수십만원의 회식비를 들여 전체 회식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개업안내장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자신의 식당에서 회식을 가질 것을 당부하거나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반론보도를 요구했다(2003광주중재3).

중재신청 결과 신청인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신의 식당에서 직원 회식을 하도록 당부하거나 요구한 적이 없으며, 자신의 식당에서 구청 직원들이 수십만원의 회식을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라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보도의 경우 사건 당사자의 견해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된 전형적인 일방적인 보도이다. 이 사건 기사에 구청 직원의 말과 함께 사건 당사자의 입장을 실었다면 중재신청 대상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2) 사례 2

제보 내용만을 근거 삼아 한 시민이 주장한 바를 그대로 보도하여 중재신청을 유발하는 경우도 대표적인 일방적 보도로 인한 사례이다.

광주에서 발행되는 한 일간지는 관광회사 운전 기사로 재직했던 한 시민이 관광전세버스를 이용한 불법운송업을 하고 있는 신청인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 기사는 전적으로 이 시민의 주장에 근거하여 논지를 펼치고 있다. 이 기사는 기사 도입부터 마무리까지 시종일관 “모씨는 ... 고발했다. 모씨에 따르면 ... 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씨는 ... 주장했다. 모씨는 ... 덧붙였다.”라는 서술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제보내용이 상당한 근거가 있고 신빙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보도양태는 무책임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기사에서 사실로 드러난 부분은 오직 고발했다는 것뿐이며 나머지는 오직 입증되지 않은 주장으로 채워져 있다. 물론 당사자의 반론도 반영되지 않았다. 중재결과, 합의되어 신청인의 반론보도문이 게재되었다(2002광주중재27).

3) 사례 3

이 사건 보도는 2002년 8월 광주지역 일간지가 보도한 내용으로 아파트입주자 대표인 신청인이 시공회사의 경영부실을 틈 타 임의로 특정업체와 가스공급 계약을 맺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요지를 담고 있다. 기사를 훑어보자.

아파트입주자 대표인 ○씨가 지난 7월 가스(LPG) 공급과 관련 시공업체의 경영 부실을 틈 타 시공업체로부터 모든 권리를 양수받은 H가스와 아파트 주민들과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경기도 B에너지와 ‘가스공급체결계약’을 했다. ○씨는 가스공급 계약과 관련해 말썬이 일자 뒤늦게 주민동의서를 받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기사 말미에 중재신청인이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는 내용이 있으나 신청인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신청인은 반론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가 중재신청 후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다수 주민들이 가격인하를 요구해 H가스측과 인화된 가격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으나 시공사의 부실 등을 이유로 계약체결을 미뤘고 수 차례에 걸쳐 구두와 문서상으로 통보했으나 이를 무시해 주민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B가스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씨는 또 ‘주민동의서는 완도군의 요구에 따라 받고 있는 것이지 이번 계약과 관련해 사태수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이번 계약에 반발하고 있는 주민은 약간 명이고 대다수 주민은 찬성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라는 내용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여 취하된 사례이다(2002광주중재31).

3. 간접보도형태

1) 성명서 내용을 인용보도한 사례

광주지역 모 일간지는 2003년 8월, “노조와 교섭에 응할 것’ 시민단체, 장애인 복지관측에 요구”제하의 기사에서 장애인복지관의 노조파업과 관련,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를 인용하여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박탈, 침해하는 것은 심각한 위선”,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협상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중재대상기사는 신청인의 견해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인 내용을 보도하여 자율적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반론보도청구를 하였다(2003광주중재18).

이 사건 기사는 시민단체의 성명서를 충실히 반영하여 그 요지를 잘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성명서에만 기초하여 작성한 기사는 사건 당사자인 신청인의 입장 확인 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성명서에 대한 신청인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되었고 원문 보도에 준하는 분량으로 보도가 게재되었다.

2) 국정감사 자료의 오독으로 인한 사례

모 일간지는 “비리투성이 영산강환경청” 제하의 사설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국감자료에 따르면 감염성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29개항을 지적 받아 무더기 징계가 뒤따랐다. 먹는 샘물 유통업체의 비위생적 관리를 적발하고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았다. 또 폐기물업체가 건축폐자재를 방치한 것을 소홀히 다뤘다가 상부기관의 지적을 받고 시정하기도 했다. 이밖에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미루다가 감사에서 들통났다. 그런가 하면 환경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업체의 검사결과 통보를 늦추고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들의 등록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총체적 비리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자신들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내보이며 이 사건 기사가 잘못됐음을 주장하였다(2003광주중재39). 이 사건은 해당 언론사가 중재심리 전에 신청인의 정정보도 요구를 수용하여 정정보도문을 게재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이 사건보도의 경우 국정감사 자료를 오독한 데서 기인했다. 또한 이 중재 신청 대상 보도가 사실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흔히 의견이나 논평에 해당하는 경우, 정간물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실적 주장’이라 볼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래서 대표적인 의견, 논평기사인 신문 사설이나 기자 칼럼

등에 대해 중재신청이 제기되면 다소 의아해 하는 언론인이 종종 있다. 그러나 의견이나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4. 추후보도청구 사례

추후보도청구는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행사할 수 있다.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경우란 내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되거나 기소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 되는 경우와 기소 후의 단계에서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들 수 있다. 무죄판결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나 보도된 혐의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그 범위 내에서 추후보도청구가 가능하다.

언론의 범죄사건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의해 그 예방책을 강구함은 물론 사회방위의 역할에 기여하는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 및 심리에 의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나 피고인은 헌법상 무죄의 추정을 받을 뿐 아니라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혐의사실의 보도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광주중재부에 신청된 추후보도청구 사례로는 2003년 한 국악인이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이 지역 일간지와 방송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신청인은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 결정이 내려지자, 지난 7월 자신의 혐의와 사법처리 사실을 보도한 8개 언론사를 상대로 추후보도청구를 하였고 그 결과 모두 신청인의 무혐의 처분 사실이 보도되었다.

5. 중재결정된 사례

모 일간지는 한 이익단체의 광주시지회장이 새로 선출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새로 선출된 지회장의 소감도 곁들인 기사를 게재하였다. 일반 동정

기사의 성격을 지니는 이 기사는 언뜻 보면 하등의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정정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제기하였다. 오히려 자신의 단체를 널리 홍보해 준 것에 감사해야 할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인가? 이 단체는 이 사건 보도에서 언급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지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정정보도를 요구한 것이다(2002광주중재32).

단순한 오보라 생각되어 질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 중재부는 중재결정을 내렸다. 이 단체는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중이었고 해당 언론사는 갈등을 빚고 있는 어느 한측이 보낸 보도자료를 토대로 기사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실이 그러하지 않다면 정정보도하면 간단한 문제로 보이나 언론사측은 이 단체 관계자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정보도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측과 상반된 입장의 사람이 승소하게 되면 다시 정정보도해야 하므로 곤란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중재부는 당시 신청인의 선출절차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정보도할 것을 결정했고 언론사측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신청인의 요구대로 정정보도된 사건이다.

보도자료는 언론사가 일일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 관행이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기 보다는 신청인의 내부 사정이 어떠한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면 이를 바로 잡는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 사건이다.

6. 기각 사례

반론권은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론문의 보도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당사자 적격 해당 여부

모 일간지가 광주시의 5·18 행방불명자 심사와 관련해 청와대가 재심의

할 것을 지시했으며, 5·18 행불자회가 청와대를 방문하여 그동안 광주시가 보상신청 심사를 벌이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전면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해 관계자와 4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대해 보도내용과 관련한 광주시 해당 부서에 근무하던 신청인은 청와대가 광주시에 재심의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4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한 사실도 없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중재부는 이 사건 기사의 취지는 5·18 행불자회가 청와대 관계자와 행불자 심사에 대해 합의했다는 내용인데 신청인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이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피해를 보는 당사자라 보기 어려워 보도의 피해자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2001광주중재14).

2) 사실적 주장 해당 여부

모 일간지는 이 지역 사업체 노동조합이 타업체에 비해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수준이 월등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성과급 지급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 사실에서 언급된 해당 노동조합은 파업의 근본적인 본질은 급여와 관련이 없는 노동쟁의이며, 노사간 신의성실에 입각한 약속이행 요구 외에 무리한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며 반론보도신청을 하였다.

중재부는 사실적 주장이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의 존부에 관한 사항의 주장으로서 그 존재 여부를 판정할 수 없는 평가적인 인식의 표현인 의견, 감정, 논설, 논평, 비평, 견해 등과는 대비되는 개념”이라 설명하였다. 이 사건 기사로 신청인이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는 생각되나 신청인의 주장을 미루어보면 그 피해가 피신청인의 사실적 주장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 피신청인의 사실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논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건을 기각하였다(2001광주중재17).

IV. 결론

광주중재부에 접수된 중재신청사건을 중심으로 중재신청현황과 처리결과 및 그 추이를 살펴본 결과, 중재신청 사건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재신청의 증감 요인은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은 미루고 그 추이만을 살펴보는데 만족하여야 할 것 같다.

지난 5년간 중재신청사건의 처리결과, 양당사자가 합의한 비율은 전국의 평균 합의율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나 처리결과와 관계없이 피해구제보도된 사건의 비중은 전국 평균 피해구제보도율에 비해 10%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전남 언론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중재신청 대상 기사 내용의 대부분은 사건 당사자의 입장을 기사에 반영하지 않아 중재신청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처리결과 기각된 사건도 있고 중재불성립된 경우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면 어느 일방의 주장만을 보도하여 다른 입장을 주장하는 신청인이 중재신청한 사건이 다수이다. 따라서 취재 일선에 있는 기자들이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건 당사자들의 입장을 청취하여, 기사에 반영하는 자세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최근 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언론중재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을 두고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현 정부 들어 갑작스레 등장한 시선이 아니다. 지난 김대중 정부때도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천명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중재신청이 증가하자 이를 두고 언론 자유의 위축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야당에서는 “언론의 비판적 보도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했고, 여당에서는 “사전검열, 언론통제 등 비정상적 권언관계에서 정상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바뀌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상반된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⁴⁾ 이러한 잔상이 채 지워지기 전에 재연되는 양상이다.

정부기관이 언론중재신청 당사자가 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든, 분명한 것

4) 미디어오늘, 2001. 9. 13 ; 동아일보, 2001. 9. 27.

은 언론중재는 화해와 조정의 장이라는 점이다. 중재부에서 설혹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게재를 결정하더라도 이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언론중재신청 대상이 되었다고 잘못된 보도라 평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반론보도를 하였다고 하여 기분나빠 할 사안도 아니다. 반론은 반론일 뿐인 것이다.

참고문헌

박선영, 『언론정보법연구 II』, 법문사, 2002.

박용상, 『언론과 개인법익』, 조선일보사, 1997.

양경승,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주요 쟁점”, 『언론중재』, 1996년 겨울.

양경승, “언론중재제도의 법제사적 의미”, 『언론중재』, 2001년 봄.

언론중재위원회, 『연차보고서』, 2000~2003.

조준원, “반론보도현황과 개선방향”, 『신문과방송』, 1997년 12월호.

조준원, “변화하고 있는 반론권 요구와 수용”, 『밀레니엄』, 1998년 가을, 서강
엔터프라이즈.

표성수, 『언론과 명예훼손』, 육법사, 1997.

한동원, “중재신청사건으로 본 언론중재 20년”, 『언론중재』, 2001년 봄.